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규정

제정 2017.07.01.
1차개정 2018.03.01.
2차개정 2022.10.17.

I. 목적

이 실천사항은 원사업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실천사항

1. 기본원칙

이 실천사항은 원사업자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운용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의 자율성,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원사업자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실천사항

가.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1)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2) 기존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용을 위해서 설치된 심의기구 등이 위 (1)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내부 심의위원회로 운용할 수 있다.

나.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

(1) 내부 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내부 심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직전사업년도 하도급거래금액에 대한 수급사업자별 당해사

업년도 개별 하도급거래계약(예상)금액이 일정비율(직전사업년도의 하도급거래금액이 1,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2%, 1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1%)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관련 사전 심의사항 예시>

- ①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
- ②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여부
- ③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
- ④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
- ⑤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 ⑥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

(3)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4)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5)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와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조정한다.

(6) 필요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7)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예시. 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필요시 징계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다.

(8)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3. 분쟁조정절차

가. 원사업자는 협력업체와의 분쟁 발생시 의견 청취 수단으로 다음 각 호를 운영한다.

- (1) 사이버감사실(원사업자 홈페이지)
- (2) 협력업체 사장단 회의

(3) VOC

나. 분쟁조정 절차는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원사업자의 임직원은 상기 수단을 통해 분쟁사항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동반성장 담당부서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 한다.

(2) 위원장은 분쟁 사항에 대하여 동반성장 담당부서에 사실관계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동반성장 담당부서는 조사를 완료한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3) 위원장은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필요시 분쟁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심의위원회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 귀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조정결과를 도출한다.

(6) 위원장은 조정결과를 CEO에게 직접 보고하고, 협력업체에 통지한다.

다. 하도급법 위반 사후검증

(1)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와의 하도급 거래에 대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점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점검을 위하여 동반성장 담당부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① 지급기한내 대금지급 완료여부
- ② 하자보수 책임 부담 전가 여부
- ③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 ④ 감액서면, 단가조정 합의서 등 하도급관련 서류 구비여부

(2) 사후검증절차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 ①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내 대금지급 완료되었는지 시스템상 정산내역 확인. 단, 지급 보류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품의작성 여부 확인
- ② 협력업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 관련하여, 계약서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 ③ 하도급관련 서류 구비 여부 확인
- ④ 기타 VOC 활동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 확인

(3) 위원장은 보고받은 내용 중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4. 징계 제안

가. 원사업자의 임직원은 "한샘 윤리규정(협력업체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및 "하도급법, 공정거래법"을 준수한다.

나. "한샘 윤리규정"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의 한다.

- ①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②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 ③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④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⑤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⑥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다. 징계절차는 다음 각호를 따른다.

- ① 원사업자의 임직원은 "한샘 윤리규정" 및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위반사항 인지시 동반성장 담당부서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 한다. 단, 동반성장 담당부서에서 직접 인지한 사항은 인지한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 한다.
- ② 위원장은 보고 받은 즉시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 ③ 위원장은 필요시 피징계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시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제안할 수 있다.
- ⑤ 징계위원회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여 징계양정기준표에 따른 인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⑥ 기타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한샘 상벌규정 및 인사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5. 조치 및 관리

가.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동반성장 담당부서에 추가 조치를 지시할 수 있고, 동반성장 담당부서는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 보고한다.

나. 심의결과를 작성한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심의위원장의 결재를 득한다.

다.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를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한다.

3. 실천사항 도입·운용여부 판단기준

원사업자의 실천사항 도입·운용여부 판단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다음 각호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도입·운용한 것으로 본다.

가.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관련기준을 마련(사규, 업무지침 등)하였을 것

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기준을 공개(홈페이지 등)하였을 것

다. 내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을 것

라.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실적(실천사항 내용 심의 등)이 있을 것

부 칙 (2017. 07. 01.)

이 규정은 2017. 07.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3. 01.)

이 규정은 2018. 03.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0. 17.)

이 규정은 2022. 10. 17.부터 시행한다.